

학생회관관리운영내규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학생처장의 관할하에 있는 학생회관(제5호관, Student's Plaza)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,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내규는 학생회관(5호관) 내의 각 동아리실에 적용한다.

제3조(운영기본방향) ① 본 시설들은 학생 개개인의 취미활동 또는 단체과외활동의 중심지로 활용한다.

② 본 시설들은 전교생이 균등하게 혜택 받도록 운영한다.

③ 본 시설들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내 전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터전이 되게 한다.

④ 본 시설들의 운영은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.

제4조(운영담당) 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학생지도위원회가 제반 운영방침을 결정하고, 관리사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한다.

제5조(개방시간) 본 시설의 사용시간은 매일 07:00~23:30까지로 하며, 23:30이후 사용자는 사전에 야간잔류신청서를 학생·장학봉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3.28., 2023.9.1.)

제6조(각실이용) ① 동아리방을 제외한 각 실은 각 실의 대표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.

② 동아리방은 본 대학교 전체 동아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실당 1개이상의 동아리가 공동 사용하며, 동아리연합회가 통제, 배정한다.

③ 학생자치기구의 사무실, 동아리방을 제외한 각 실들은 공동 사용한다.

④ 본 시설 내에서는 취사, 취침행위를 할 수 없으며,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사용은 금한다.

제7조(용도변경) 각 실의 용도변경은 학생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품관리) ① 학생회관 내 시설, 비품을 고의로 파손할 때는 변상 조치한다.

② 관리, 운영의 인수인계는 학생처장의 승인하에 행해져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내규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준용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본 개정내규는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본 개정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